

# 상 고 이 유 서

사 건 2000도 0000 강제추행

피고인 0 0 0

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(상고인)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.

## 다 음

### 1. 원심판단

원심은 피고인(상고인,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합니다)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습니다.

#### 2. 피고인의 변소요지

- 가.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〇〇. 〇. 〇. 〇〇:〇〇경부터 〇〇:〇〇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'〇〇〇 레스토랑'에서 술을 마신 후, 숙취 해소를 위해같은 날 〇〇:〇〇경 〇〇시 〇〇구 〇〇길 〇〇 소재 〇〇〇찜질방에 갔습니다.
- 나. 피고인은 위 찜질방에서 샤워 등을 한 후 불가마 맥반석 사우나 실에서 수면을 취하다가 같은 날 ○○:○○경 위 찜질방 내 남녀대나무방 휴게실로 자리를 이동하여 수면을 취하려 하였습니다. 이는 당시 피고인이 수면을 취하고 있던 위 맥반석 사우나 실이 실내환기를 위해 출입문을 열게 되었는데 이 때문에 수면에 장애가 될 듯하여 조용한 방으로 이동한 것이었습니다.
- 다. 당시 위 남녀대나무 방 휴게실은 사물을 겨우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어두웠고 이에 피고인은 잠자리를 살피기 위해 두리번거리게 되었습니다(휴면을 취

2001도3490 곳이라 휴게실 안은 소등된 상태였고 밖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빛<sup>8</sup>8 사물을 겨우 분별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). 휴게실 방안을 살피던 피고<sup>8</sup>8 휴게실 양 쪽 끝에 여자 두 명이 누워 수면을 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두 명의 여자 사이의 빈 공간에 눕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얼마 후 기지개를 펴게 되었는데 이 때 피고인의 양팔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고 그 얼마 후 공소외 김□□의 고함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.

#### 3.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반의 점

- 가. 원심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언니인 공소외 김□□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의율하였습니다.
- 나. 경찰조사당시 피해자의 진술은 '피의자 〇〇〇이 제 옆에 누워서 저의 신체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....'(수사기록 11쪽) 등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는 듯 기술되어 있으나, '저는 잠이 들어서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당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언니가 목격하였다고 하는데......'(수사기록 38쪽)라고 진술한 검찰조사 당시 피해자의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의 신체접촉 사실에 대한인식이 없었고 다만, 추행현장을 목격하였다는 피해자의 언니인 위 공소외인의 말과 행동으로 그렇게 추정하는 듯 합니다.
- 다. 즉, 피고인에게 이 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는 위 공소외인의 진술뿐입니다. 그러나 첫째, 당시 위 휴게실 방안은 소등된 상태로 어두웠는데 위 공소외인이 피고인의 행동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은 의문이며 둘째, 위 공소외인은 피고인이 1-2 분에 걸쳐 피해자를 3번에 걸쳐 겨드랑이부터 엉덩이까지 쓰다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(수사기록 6쪽, 40쪽),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면 피해자가 이를 전혀인식하지 못했다는 것도 의문입니다. 만약 피고인이 위와 같은 추행을 하였다면 피해자가 먼저 위 행동을 인식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
- 라. 또한 피고인이 처와 두 자녀를 두고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사는 평범한 시민으로 숙취해소를 위해 찜질방에 갔다가 이 건과 같은 추행을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또한 당시 위 휴게실 안에는 피해자 혼자만이 있었던 것이아니고 위 공소외인도 함께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감행할 수 있었느냐도 의문입니다.

#### 4. 법리오해의 점

가. 가사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

- 2001 도 3490 덩이를 수차 쓰다듬는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영화 은 강제추행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. 강제추행죄에 폭행이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지만 최소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위 행동이 어떠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.
  - 나. 이 건 기록을 살펴볼 때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이 건 당시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의 위 행동이 강제력을 동반한 유형력의 행사가 아니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. 따라서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.

#### 5. 결 론

이상의 이유로 상고이유를 개진하오니 피고인(상고인)에게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00. 0. 0.

피고인(상고인)의 변호인 공익법무관 ○ ○ ○ (인)

대법원형사제〇부(〇) 귀중

<b>2001도3490</b> 제출기관	상고법원 (형사소송법 379조)	제출기간	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은 사 영화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 (형사소송법 379조1항)
제출의무자	※ 아래(1)참조	제출부수	상고이유서 및 부본 각1부
기 타	상고인이나 변호인이 20일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상고기각 결정을 함(형사소송법 380조)		

- ※ (1) 제출의무자(형사소송법 338, 340, 341조)
  - 1. 검사
  - 2. 피고인, 피고인의 법정대리인
  - 3. 피고인의 배우자, 직계친족,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 단,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상소하지 못함